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-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시중은행과의 차별성 부족과 엄격한 용자조건 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기에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용자조건과 상환조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용자대상 정비(안 제4조제1항제3호 삭제)
 -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용자대상 중 '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'를 삭제
- 나.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용자조건 완화(안 제4조제3항 삭제)
 -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 용자조건인 학교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의 위화감 해소 및 신청절차 간소화 추진
- 다. 용자금의 상환조건 완화(안 제7조제1항)
 - 용자금의 "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" 조건을 "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"으로 변경하여 용자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
- 라.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(안 제7조제2항)
 - 조례에 규정된 "연 3퍼센트" 대부이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

마. 신용보증 용자 실시 근거 마련(안 제8조제2항)

- 현재 연대보증, 부동산담보 제공자 외에 신용보증으로 용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용자조건 완화 및 용자대상자 확대가 주요 개정내용으로 용자금 등의 지원대상 및 조건 관련 규정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4. 11. 13. ~ 12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권고사항 있음

- 평가기준 : 이해충돌 가능성(사후통제 장치 규정)
- 평가결과 :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회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
- 개선방향 :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'회의록' 작성·보관 명시
- 조치사항 : 권고사항 반영(제6조제3항 개정)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4.12.11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·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저소득생활안정자금”을 “생활안정자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이상의 재학생”을 “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특히”를 “특별히”로, “사업자금”을 “용도의 자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제5조의2 중 “시행일로부터 5년으로”를 “2018년 5월 30일까지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용관리”를 “운용·관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운용관리”를 “운용·관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위원회의 사무”를 “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 위원회의 사무”로, “간사는 담당과의 담당팀장이, 서기는 담당직원”을 “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,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2년 균분”을 “3년 균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 3퍼센트로 한다.”를 “연 3퍼센트 이내에서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연대보증”을 “신용보증, 연대보증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사업등을”을 “사업 등을”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서와”를 “기금운용계획안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용자대상) ① 주민소득지원자금(이하 “소득자금” 이라 한다)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</u></p> <p>② <u>저소득생활안정자금</u>(이하 “안정자금” 이라 한다)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</u></p> <p>4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사업자금</u></p> <p>③ <u>제2항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</u></p>	<p>제4조(용자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<u>생활안정자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또</u> <u>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</u> - -</p> <p>4. ----- <u>특별</u> <u>히</u> ----- <u>용도의</u> <u>자금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용자하는 경우에는 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,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기금운용 위원회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

----- 2018년 5월 30일
까지로 -----

제6조(기금운용 위원회) ① -----
운용·관리-----

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
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
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
필요한 사항

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
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
두며, 간사는 담당과의 담당팀
장이,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.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
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
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
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
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
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
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
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
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임기 내
에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
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
것으로 본다.

⑤ ~ ⑦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운용·관리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
위원회의 사무-----
----- 간사는
기금업무 담당팀장이, 서기는
기금업무 담당직원이-----.

④ -----

-----.

<후단 삭제>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①
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
은 3천만원 이하, 안정자금은 2
천만원 이하로 하되, 2년 거치
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
다.

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
센트로 한다.

제8조(융자금의 대부신청) ① (생
략)

② 대부신청에 따른 연대보증,
담보제공 또는 필요한 서류와
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
내규에 따른다.

제10조(중복융자의 금지) 융자금
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
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는
다른 사업등을 위한 자금을 중
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.

제15조(지도·감독 및 위탁사무
에 대한 검사 등) ① ~ ③ (생
략)

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
해당 금융기관은 소속공무원의
검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

제7조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① -

----- 3년 균분 -----
-----.

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
센트 이내에서 이 조례 시행규
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융자금의 대부신청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----- 신용보증, 연
대보증-----

-----.

제10조(중복융자의 금지) -----

----- 사업
등을 -----
-----.

제15조(지도·감독 및 위탁사무
에 대한 검사 등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아니 된다.

다.

제1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
보고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
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
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
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
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
여야 한다.

제1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
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기금운
용계획안과 -----

-----.